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201728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186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8,532,901원, 원고 B에게 165,532,9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2004. 6.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8. 10. [] 청구 소재 []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피고가 운영하는 []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고 []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날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12. 8. 10. 11:26경 어머니인 원고 B와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통증을 호소하면서 위 해수욕장에 설치된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방문하였는데 어떤 종류의 해파리에 쏘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 119시민수상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던 소방공무원들은 망인의 다리와 손에 해파리에 쏘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처 부위를 바닷물로 씻고 식초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뿌리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바닷물을 구하러 해변으로 가거나 해파리에 쏘인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원고 B는 망인을 수

돗가로 데리고 가 수돗물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씻었다.

3) 망인은 같은 날 11:48경 공항119 안전센터 구급차로 후송되어 12:02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 D는 망인의 상처 부위에 해파리의 촉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처방하였으며, 같은 날 12:35경 진료를 인계받은 의사 E은 소독용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나 원고 B를 상대로 망인이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4)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3:40경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후송되는 동안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식상태가 열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5) 망인은 같은 날 14:33경 인하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15:58경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증) 등에 의한 저산소증,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의 수사기관 진정 및 진행경과

1) 원고들은 2012. 8. 13. 피고 병원 의사 E을 상대로 인천해양경찰서에 'E이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잘못된 응급치료를 함으로써 해파리의 독성이 급속히 퍼져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2)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파리에 쏘인 경우 올바른 응급치치방법 및 E이 망인에게 알코올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에 업무질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의뢰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①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독성학교실 교수 F은 2012. 9. 5.

'독성해파리에 쏘인 경우 피부에 남아있는 해파리 촉수와 자포를 제거하고 바닷물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식초나 알코올의 사용에 대하여는 독액의 추가방출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초기 세척에 의하여 해파리의 촉수와 자포가 제거되었다면 사용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법의학관 G은 2012. 9. 3. '피고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을 거즈에 묻혀 닦아준 것은 환부의 소독 및 촉수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황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며, ③ 대한의사협회는 2011. 11. 27. '해파리의 독성 증상은 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해파리 자상 사고 시 어떤 해파리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인지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관계로 국내 해파리의 독성과 관련하여서는 참고 문헌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응급처치 요령에 대하여도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9 구급대원 및 담당 의사들이 시행한 응급처치과정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실을 지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4) 인천해양경찰서는 2012. 12. 20.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라. 해파리에 쏘일 경우 나타나는 증상 및 응급조치

1) 해파리에 쏘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국소적 중독증상과 전신적 중독증상으로 구분되는데 국소적 중독증상으로는 접촉 부위 통증, 홍반, 두드러기 등이, 전신적 중독증상으로는 경도 및 중등도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중증으로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호흡곤란, 신부전, 심정지 등이 있다. 전신적 중독증상은 대개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이거나 쏘인 부위가 넓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독성에 대한 인체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민한 환자의 경우 심각한 전신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2) 해파리에 쏘일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우선 피부에 남아 있는 해파리의 촉수 및 자포를 집게나 장갑, 플라스틱 카드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낸 후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척과 상처 부위를 열어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하나 항독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응급처치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치료 당시 해파리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맹독성의 일부 해파리에서 존재하는 항독소 이외에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3) 한편,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이 주효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일부 문헌¹⁾에서는 알코올 등으로 해파리에 쏘인 상처 부위를 씻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다른 일부 문헌²⁾에서는 알코올이 몇몇 종류의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차적인 치료법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배포한 '해파리 접촉피해 응급대처법'에는 종래 '노무라입깃해파리, 유령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입방해파리에 쏘일 경우 응급처치법으로 알코올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삭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가 제출한 임상독성학 교과서(을가 제1호증)에서는 '자포 독소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해 초산(3~10%), 육류 연화제, 알코올(80% 이상) 등으로 환부를 다시 씻어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외국문헌(갑 제8, 9, 23호증)

2. 원고들의 주장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처치방법이 다르므로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치료할 때에는 해파리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신중을 기하여 치료하여야 하며, 특히 해파리에 쏘인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게 되면 독성이 심하게 퍼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알코올로 소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E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어떠한 종류의 해파리에 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였고, 그 결과 해파리의 촉수에서 나온 독이 알코올로 인하여 화학작용을 일으켜 급속히 몸에 퍼지게 됨에 따라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는 해파리에 쏘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활력징후 역시 정상이었던 망인이 알코올 소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

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 B를 상대로 망인이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E은 소독용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한 사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몇몇 종류의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차적인 치료법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해파리에 쏘인 경우의 응급처치방법으로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이 주효한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서 알코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최근 배포한 '해파리 접촉 피해 응급대처법'에는 알코올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라는 종전의 기재 내용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알코올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이 인천해양경찰서에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알코올 소독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2. 8. 3.부터 2012. 8. 16.까지 약 2주간의 연안 부근 해파리

분포도에 의하면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많이 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망인이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결국 망인이 어떠한 종류의 해파리에 쏘인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응급 조치 당시 망인이나 원고 B에게 이를 문의하였더라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해파리의 종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맹독성의 일부 해파리에서 존재하는 항독소 이외에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치료법이 없어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 초기 응급처치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연구에서 알코올이 몇몇 종류의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 분비를 촉진하므로 알코올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한 E의 조치에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독성에 대한 인체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민한 환자의 경우 그리 중하지 않은 해파리 접촉만으로도 일반적인 경과를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전신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E이 망인을 쏜 해파리의 종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점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진석

 판사 김민기